

검 토 보 고 서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15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20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현 재)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2. 7.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7. 4.

2.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10년)까지로 함
-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 (1)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2)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3) 규정에 의한(의하여) ⇒ 따른(따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500백만원(기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2012.5.25. ~ 6.18) 결과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5.30] [법률 제10736호, 2011.5.30,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 2. 8,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2. 7.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7. 4.

2. 제안이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 및 명확화하여 무분별한 축사 건립을 억제 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별표)

나. 가축사육제한 구역 개정(안 제3조)

(1) 전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서
- 소·말 100m , 젖소·사슴·양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확보

○ 지형도면 작성 고시 : 20,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2012.5.23. ~ 6.12) 결과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남도의 조례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명확히하여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주거 밀집지역과의 거리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973호, 2011.7.28, 일부개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자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 「수도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타법개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10.5.25>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0호, 2011. 4. 5, 타법개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제2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자연공원법」

[시행 2011.10. 6] [법률 제10548호, 2011. 4. 5, 일부개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관리한다. <개정 2011.7.28>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원관리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연공원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행위허가)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11.10. 6] [법률 제10548호, 2011. 4. 5, 타법개정]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전문개정 2009.2.6]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2. 7.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7. 4.

2. 제안이유

거창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의 명칭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명칭은 “거창군 농업인대상”으로 규정
- 나.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우수한 농업기술을 통하여 차별화 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
 - 농축산업 발전에 그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 등으로 농업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본인 농장(사업체)을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운영이 가능한 사람
- 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수상후보자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읍면장의 추천으로 함
- 라.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으로 함

-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거창군 농업회의소 부회장, 군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그밖에 농업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라.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

마. 심사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

- 위원회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

바. 시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 시상은 군수의 상장과 핸드프린팅 동판으로 함
- 수상자에게는 정부의 포상 추천, 정부 또는 도·군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등 특전을 부여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2012.5.29. ~ 6.19) 결과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 농업인을 발굴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거창군 농업인 대상”의 명칭을 정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상토록 함과 동시에 수상자에게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핸드프린팅 동판 게시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본 조례안은 선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어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업농어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2. 7. 4.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7. 4.

2. 제안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영농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농업보조금 :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교부하는 자금
- 농업경영체 :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
- 보조사업자 : 농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 보조금 총액제 : 농업경영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 보조금 일몰제 :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 일반적인 보조사업,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공익발전 및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정의함

나. 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등

다. 보조금지원 순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신규 신청자 ⇒ 지원받은 보조금액 적은 ⇒ 친환경 영농정도
⇒ 젊은 신청자 ⇒ 해당 분야 영농규모가 큰 신청자

라. 보조금 지원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마.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선정단계 ⇒ 실행단계 ⇒ 완료단계

바.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건축시설은 10년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은 5년
-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사. 보조금 총액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농업인은 7천만원
-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원

아. 보조금 일몰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농업인에게만 적용, 적용기간은 처음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
-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

자. 총액제, 일몰제 적용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하나의 사업이 총액제 금액 또는 일몰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일몰제를 적용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각종 직불금 및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계량사업,

품종계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
하는 보조금

차. 보조금 제제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 :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액이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포기로 미추진 :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제기간기산일은 제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5.25. ~ 6.15.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준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영농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소득창출육구 강화와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의 필요성 등으로 시대적 흐름이 농업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서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공금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1.9.6>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